

	물적자원 관리 규정	문서번호		3-1-32	
		제정일		2016. 06. 01.	
		개정일		2017. 06. 20.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사무처

제 1 장 물적자원 관리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물적자원의 수급 계획, 교육 및 복지시설의 운영·관리·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 확보를 위한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그 업무를 기본적 사항과 그 업무를 평가하고,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물적자원”이라 함은 교육시설, 복지시설, 기자재 교육환경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자원을 의미한다.
- ② “실험실”이라 함은 대학의 교수 및 학생이 실험·실습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실습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 (물적자원 계획) 물적자원 계획은 다음 각 호와 단계를 거쳐 수립하고 시행하며 평가한다.

- ①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교육 목표 달성과 연계되어 작성한다.
- ②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물적자원을 확보·유지하고 해당부서 별로 필요한 경우 물적자원 개선요청서와 시설 및 기자재 확보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신청 전 시설 및 기자재 심의 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받는다.
- ③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등의 물적자원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에서 담당하며, 기자재, 실험실습재료 등의 물적자원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처에서 담당한다. 단 기자재 등의 물품 구매업무는 산학협력처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처에서 구매한다.
- ④ 물적자원 평가 및 개선은 대학 자체에 적합한 효과성 평가·성과 평가 및 개선 보고서 등을 작성한다.
- ⑤ 성과평가하는 대상 위원회는 시설 및 기자재 심의위원회 및 정보화관리 운영위원회로 한다.

제4조 (교육시설의 관리·유지 및 개선) ① 교육 및 서비스 지원에 충분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시설의 관리·유지 및 개선 업무는 “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”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	물적자원 관리 규정		문서번호	3-1-32	
			제정일	2016. 06. 01.	
			개정일	2017. 06. 20.	
			페이지	2/2	관리 부서 사무처

제 2 장 학생 및 교직원 복지시설

- 제5조 (학생 및 교직원 복지시설) ① 사무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한다.
- ② 학생 및 교직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업무는 “재난 및 시설물 관리 규정”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대학 보건실, 상담실 및 그 밖의 복지시설을 갖추고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